

公共圖書館大會 發表論文

現行圖書館法의 問題點

—公共圖書館의 效率的 運營을 期待하며 —

崔 在 元

(大邱市立 圖書館長)

머 릿 말

筆者가 圖書館에 關心을 갖고 처음 발을 들여 놓은 때가 1965年 11月, 그러니까 올해로써 3年째 이 곳에從事 해온 셈이 된다.

그러나 이期間 동안 筆者は 韓國의 諸圖書館들이 그本來의 使命을 完遂해 나가기에는 어딘가 内部組織과 同組織을 規制할 法規의 未備點이 너무나 顯著하게 露呈되어 무언가 根本的인 一大 刷新策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먼저 筆者が 關係한 圖書館의 規制된 職制나 이에 依據한 確實한 正規職員의 定員의 定立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急한대로 若干의 定員을 確保하고 또한 職制도 新設한 然後에 公共圖書館이 가장 發達되었다고 定評이 있는 美國을 訪問해야겠다고 決心하던 차에 마침 美國 公共圖書館의 典型인 Cleveland Public Library와 連絡이 되어 67年 8月 7日 韓國을 떠나翌年 2月 10日 歸國時까지 美國의 圖書館界를 살피고 特히 上記한 圖書館에서 館長의 特別 好意로 4個月間研修할 機會를 얻은 것은 커다란 收穫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런데 筆者の 訪美 視察時の 基本的 態度는 各國家에는 제각기 固有한 歷史的인 背景이 있고 各國마다 獨自의in 運營方法이 있는데 單純히 美國 圖書館의 表相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 圖書館이 어떻게 向方을 定해야 하느냐? 나아가서 우리 나라의 特殊事情을 基底로 하여 우리 스스로의 獨自의in 길을 摸索하고자 한 데에 訪美 目的의 核이 주어진 것이다.

事實 우리 나라와는 너무나도 相異한 運營方法·奉仕方法·思考方式에 接할 때마다 새삼 우리 나라 圖書館을 새로운 觀點에서 批判, 評價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어찌면 우리 나라 도서관은 백지에서 다시 出發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美國의 圖書館奉仕에는 建物 5%, 資料 20%, 職員 75%인데 比하여 우리의 現實情은 最低 基本的in 建物 5%를 設立치 못해 하덕이는 락한 狀況에 逢着하고 있으니 實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나아가서 現行 職制나 圖書館法規의 未備는 多分히 韓國 圖書館의 不在現象을 如實히 表證해주고 있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줄 안다.

現行 圖書館法의 概觀

現行 韓國의 圖書館法은 1963年 10月 28日 法律 第1,424號로 制定, 公布되었고 2年 後인 1965年 3月 26日에는 大統領令第2,086號로 圖書館法 施行令 公布를 基點으로 비로소 若干의 規範強化策이 마련된 것은 1967年 3月 27日 大統領令 第2,964號의 第1次 改定이 있은 然後부터였다.

그리나 本法令 公布 以前까지는 韓國의 諸圖書館들은 私生兒처럼 全然 法的 恵澤을 받지 못하고 政府의 無關心 속에 放置狀態下에 두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本法律의 制定으로 圖書館運營과 管理가 비로소 法의 保護를 받을 수 있는 劃期的인 立法措置라고 看做할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圖書館의 運營과 管理面에 있어서 從來의 施策과 對比해서 若干의 進一步의in 法的in 根據가 이루어졌다는데 그칠 뿐 管理支援, 財政支援 등 圖書館運營面의 核心部分에 있어서는 참다운 圖書館發展을 위한 本法의 存在價值가 疑心될 만큼 너무나도 薄은 未備點이 內在되어 있는 듯하며 또한 이의 改定 補完만으로서는 아무리 法運用의 妙를 폐한다 할지라도 公共圖書館의 發展을 期하기가 至難하다고 생각한다. 이의 根本的in 補完策으로 筆자는 于先 새로이 大學, 學校, 特殊圖書館과는 別個로 “公共圖書館法”을 制定하여 公共圖書館의 設立, 運營을 國家, 道, 市, 郡 등의 地方公共團體로 하여금 責任 지게 하고 나아가서는 完全히 義務化할 것이 要請된다. 圖書館의 圓滑한 發展이 있는 데서 國家의 利潤追求가 더욱 增加된다는 事實은 先進 各國의 圖書館 關係立法 및 그의 活用에서 立證되므로 우리는 더욱 이 点에 留意하여 公共圖書館法制定은 우리의 現實情을勘案할 때 時急히 서둘러야 할 立法作用이

다.

그러면 公共圖書館法을 制定 運用하고 있는 外國의 先例를 살펴 보면 카나다는 州 마다 「公共圖書館法」이 制定 施行되고 있고, 렌마크는 1920 年에 이미 法이 制定되어 施行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60 餘年前에 立法化했고, 英國은 「國立圖書館法」(National Library Act)에서, 美國은 「圖書館 奉仕法」에서 이미 그 참다운 面貌를 더듬어 볼 수 있다.

公共圖書館의 管理維持條件과 文教政策

첫째로 圖書館은 營利事業이나 權力機關과도 相異한 하나의 純粹 奉仕機關으로 權力機關이나 營利團體가 어여한 社會에서나 比較的 發生, 成長이 容易한 데 反하여前述한 圖書館은 非營利, 非權力機關인 까닭에 國家나 地域社會의 積極의 育成과 保護 없이는 存立에 至大한 影響을 받게 된다. 더구나 公共圖書館은 文化機關 中에서도 受益者負擔原則이 適用되지 않는 데 反하여 財政面에서 그 消耗가 無形의 精神文化의 所產으로 남는 까닭에 결보기에는 消費 事業體란 印象을 當該 爲政者들에게 주기 쉽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重要性을 看過해 버리게 된다.

그런 까닭에 무엇보다 當該 爲政者나 國民들의 遠大한 비전이 있어야 함과 同時に 이 事業은 어디까지나 助長事業인 까닭에 그 自體의 存立을 維持하기 위해서는 恒時 周圍의 協助者를 가져야 함은 再言을 不要 하나 特히 公共圖書館은 어떤 限定된 地域社會의 모든 住民들에게 奉仕하는 機構로서 行政機關과는 判異하여 機構組織에 앞서 現實의 으로 運營을 할 수 있도록 하는 施設具備가 第一要件이라고 생각된다. 行政機關은 機構만 가지고서도 法規의 뒷받침 아래서 效率의 運營을 期待할 수 있지만 圖書館은 施設, 資料 등의 資源 없이는 그 機能을 完全히 發揮할 수 없음은 公知의事實이다. 具體的으로 이러한 資源 中에서도 資料(圖書, 定期刊行物, 팜플렛, 新聞, 寫真, 插畫, 포스터, 頻頸, 슬라이드, 필름, 樂譜, 地圖, 레코오드, 마이크로複製品 등)은 圖書館의 生命에 比肩할 수 있을 만큼 重要한 要素들이다. 特히 이와 같은 資源 優位論은 미국 같이 經濟의 諸與件이 充足 狀態에 있는 경우에는 이 資料의 問題는 제일 基本의 것으로 解決되어 보다 運用의 妙를 期하기 위해 職員의 構成 및 按配에 重點을 두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를 蹤跌 없이 收容할 만한 獨立된 建物의 要件 위에 行政의 全面의 財政支援을 받는 經費의 先要 補填이라는 조건이 附隨되므로, 이 모두가 圖書館發展途上의 가장 큰 要件의 하나가 된다. 圖書館의 成長過程에는 社會의 協同心의 發揚과 그것이 行政의 諸政策에

反映될 때 비로소 圖書館의 管理條件에 符合되는 實効性 있는 方案으로 示顯되어질 수 있다고 思料된다.

둘째로 文教行政으로서의 圖書館政策은 表現이 至難할 만큼 文教行政面의 圈外에서 度外視된 感이 있어 圖書館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結果만 招來할 뿐 一貫性이 缺如된 圖書館行政에 向方이 무엇인가를 提示할 수도 없다.

이러한 模糊한 政策 具現의 與件 속에서 圖書館의 成長을 期待하고 渴求한다는 것은 緣木求魚格인 비틀어진 圖書館行政의 亂脈相半 表出시킬 뿐이란 事實을 看破해야 될 줄 안다.

要컨대 무엇보다 緊要한 것은 確固한 圖書館政策의 確立과 이를 밀고 나갈 獨立된 行政分野의 設置인 바, 外國의 경우 불란서의 「圖書館局」(國民教育省), 「렌마크」의 「圖書館局」, 「필립핀」의 「公共圖書館局」, 南阿聯邦의 各州 「圖書館奉仕局」(Provincial Library Service), 끝으로 美國은 聯邦政府 教育福祉省의 教育局에 「圖書館奉仕課」(우리의 局에 諸當)가 있고 各州에는 公共圖書館의 州 全體 計劃을 擔當하는 機關이 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도 좀 더 一貫性 있는 圖書館 政策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筆者の 私案이지만 中央官署의 文教行政機構에 「圖書館局」設置를 推進해서 局下部組織으로 公共, 大學, 學校, 特殊 圖書館課 및 圖書館教育課를 두어 圖書館 管理政策의 一元化와 體系 確立과 立法, 圖書館教育, 各級 圖書館의 指導育成을 할 것이며 特히 公共圖書館에 面해서는 成人奉仕, 青少年奉仕, 兒童奉仕의 各專門部署를 두어 國立中央圖書館, 道立 및 市, 區, 邑, 面立圖書館과相互協力하는 가운데 또한 政府補助金 交付管理 등이 時急히 要請된다.

이런 緣由로 如斯한 獨立된 行政分野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圖書館 關係法規가 成案되어 立法化되고 비록 그 政策이 樹立된다 하여도 그 推進에 있어서 堪耐하기 어려운 副作用이 따름과 同時に 專門性과 責任의 限界가 模糊하고 稀薄해져서 仁義한 文教行政 首班인 長次官이 交替되거나 局, 課長의 異動에 따라 圖書館 管理條件과 政策遂行上 着지 않은 支障을 招來함은 必至의 事實이다.

이는 圖書館 管理를 專擔할 確固不動한 行政分野가 確立되어 있지 않으므로 因해서 惹起될 수 있는 政策 具現의 賭殺 또는 弱化現象과 責任限界를 固守치 않을 虞慮가 多分히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一貫性 있는 政策具現과 管理推進도 上記한 與件下에서는 期待할 수 없음도 自明한 事實이라 할 수 있다.

圖書館法과 公共圖書館

위에서 舉論한 바와 같이 公共圖書館은 行政의 保護育成 없이는 成長할 수 없다는 弱體性을 内包한 체 社會의 冷待와 行政의 無關心 속에서 자라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實情이다. 여기에 急要한 것은 法의 強力한 뒷받침은 勿論 政府의 助長策을 積極 採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具體的 方案으로 몇 가지를 例擧하면 ① 새로이 公共圖書館法을 制定하여 公共圖書館에 대한 政策確立을 期하고 ② 圖書館擔當 行政分野의 獨立을 積極 推進하고 ③ 管理의 一元化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의 支援을 全幅의 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公共圖書館育成 發展을 期約하는 捷徑인만큼 보다 積極的인 諸支援을 促求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論學의 的으로 삼으려는 것은 社會의 冷待 속에서 營利團體도 權力團體도 아닌 公共圖書館의 危機意識이 감도는 緊迫性에 照鑑하여 現行 圖書館法의 是正되어야 할 要素를 法條文을 根據로 하여 概觀해보는 것이다.

① 圖書館育成을 위한 義務規定이 全然 缺을 뿐만 아니라 單只 圖書館法은 公共圖書館育成에 대하여 第7條와 第18條에 下記와 같은 規定을 두고 있을 뿐이다. 即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衆의 社會教育 및 文化的 向上을 위하여豫算의範圍 안에서 公共圖書館의育成에 努力하여야 한다” <第7條>, “各級地方自治團體는 이 法과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置할 수 있다” <第18條 第1項>고 规定되어 있다. 그러나 紹密히 檢討하여 본 結果前者는 單純한 勸告規定이고 後者는 任意規定으로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强力性和 拘束力이 全然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만큼 法律의虛點이 露呈되고 있다. 따라서 公共圖書館은 國家나 그 所屬된 地方自治團體에서 圖書館育成에 대한 理解協助와 關心이 없을 때는 그 運營을 위한 여러 가지 뒷받침을 期待할 수 없으며 必然의 으로 圖書館의 發展도 期待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法規의 問題點 is 正이 時急히 要請되는 것은 前者에 있어서는 圖書館法 第19條에豫算의範圍 안에서라고 明示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豫算이 許容되면補助育成할 수 있고 反對로 許容되지 않으면補助는 커녕 袖手傍觀해도 何等의 抵觸 불만한 規制가 없기 때문에 이의 單純한 勸告規定이 아닌 明確하고 强力性과 拘束力이 活用될만한豫算支援의 法的根據가 마련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教育法 第68條에 明示된 教育, 學藝에 要하는 經費補填規定과 같이 公衆의 社會教育

및 文化向上에 要하는 經費는 社會教育에 관한 特別賦課金이나 使用料, 地方社會 教育交付稅, 國庫交付金,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로 부터의 轉入金 등으로 充當해야 된다는 法條文化의 定立이 무엇보다 時急히 要請되는 한편 目的稅인 公共圖書館稅 등의 稅制設置로써健全한 財政의 뒷받침이 되도록 하여 公共圖書館育成에 計期의 發展을 講究하여야 될 줄 알았다. 即 國家에서는 附加稅制度 認定과 地方自治團體에서는 條例로써 圖書館稅制度設定을 마련해야 될 줄 알았다. 現在 目的稅인 公共圖書館稅를 徵收하는 美國의 例를 보면 圖書館運營豫算(市費用으로 建立하는 建物은例外로 하더라도)은 거의 稅金 徵收로 充當하나例外로 로스안젤레스와 같이 個人資產課稅金의一定率을 圖書館費로充用하는 곳도 있고 시애틀, 벤버 같은 都市들과 같은 곳은 一般會計에서 支出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舉皆 美國의 公共圖書館運營費의 捻出方法은 上記한 바와 같이 ① 圖書館稅를 住民으로부터 直接徵收하여 운영하는 方法을 擇하고 있으며, 參考로 公共圖書館 經常費를 徵收하고 있는 各國의 住民 1人當最低基準率을 보면 美國이 3.5 弗, 캐나다가 2 弗, 독일이 2.17 마르크로 統計 숫자상 나타나 있다. ②의 경우는 國家가 補助金을 支拂하는 方法으로 美國은 圖書館補助金法인 圖書館奉仕法을 制定하여 制度의 保障을 하고 있다. 그리고 特記할만한 事實은 스웨덴의 경우는 總經費의 約 $\frac{1}{5}$ 을 占有하며 現在 國庫補助를 받고 있는 圖書館數는 約 4,700에 達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 上記한 圖書館法 18條 1項의 경우 法制度上の未備點을 論舉하면 이 規定이 單只 任意規定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實際 法運用에 있어서는 自治團體의 任意散量에 그치고 마는 것이니 若干의 强制性를 内包한 規制로서 先進 各國의 公共圖書館運營制度를 따를 만한 法의構成要素가 切實히 要請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本條項에는 當該 地方自治團體가 義務적으로 自治團體內에 法令에 符合하는 施設規定으로 1972년까지 人口 10萬以上 30萬未滿의 경우는 1個以上, 人口 30萬以上 50萬 미만인 경우 2個以上, 人口 50萬以上 80萬 미만 3個以上, 人口 80萬以上 100萬 미만 5個以上의 比率로 公共圖書館을 設置하여야 된다는 制限規定을 마련하는 것이 必須의 要件이라 보겠다. 나아가서 1973年度부터는 市, 區, 郡 아닌 洞, 邑, 面單位까지 擴大시켜 設置할 것도 아울러 要望된다.

② 指揮監督 및豫算支援을 위한 所屬廳의 一元化問題

圖書館法 第9條 第1項은 公共圖書館의 監督廳에 대

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即「私立의 公共圖書館은 第1次로 市·郡 教育長, 第2次로 道敎育委員會, 第3次로 文敎部長官의 指導 監督을 받는다」라고 明示되어 있다.

다음 叙述한 條文 要件을 살펴보면 「私立의 公共圖書館」의 監督體系는 明示되어 있으나 「公立의 公共圖書館」의 所屬 및 指揮監督에 대해서는 法律上 明確한 規定이 없을 뿐더러 單只 文敎部 職制에 文藝體育局 社會敎育課의 圖書館事務分野로서 一部를 管掌하는 體制와 教育法 第24條의 教育委員會와 教育長의 所管事項의 一部로서 第5號에 「社會敎育 其他 文化學藝의 振興에 관한 事項」이라고만 表示되어 있을 뿐인데, 이것은 오직 管掌事務 表示만 되어 있을 뿐이며, 指導·監督에 대한 體系性 있는 法節次의 根本規定이 없이 單只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인 圖書館設置 條例에 「館長은 教育長의 命을 받아 館務를 掌理하며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한다」라는 消極的인 狹意의 監督 規定뿐이니 實로 이 條項은 有名無實한 存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實證해주는 事實로서 現在 우리 나라의 公立의 公共圖書館의 大部分이 內務部 奉下機關으로 存在하고 極少數의 市, 道廳 所在地 公立 公共圖書館만이 教育委員會 또는 教育長 奉下機關으로 存立하고 있어서 設置運營에 따르는 財政의 뛰반침이라는 責任界限는 表現하기 어려울만큼 模糊함은勿論 그一部分에 屬하는 僅少部分의 財政支援은 一般行政 機關인 道, 市地方自治團體에서 負擔하고 運營의 管理監督權이라는 權限만을 教育監 또는 教育長이 管掌하고 있는 實情이라 運營의 妙를 期하기는 至難할 뿐만 아니라 至極히 不合理하고 非現實의in 運營體系이며 더욱이 內務部奉下에 있는 公立의 公共圖書館에 대해서는 文敎部系統은 何等의 監督權을 行使할 수 없는 二律背反의 現象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文敎部는 國立中央圖書館과 市·道敎育委員會奉下의 極少數의 公立 公共圖書館에 대하여서만 指導 監督을 할 수 있으며 그나마도 豫算支援은 國立Central圖書館을 除外하고는 전혀 不可能하여 實効性 있는 指導, 監督權을 行使하지 못함으로써 圖書館發展向上에 莫大한 支障을 招來하고 있는 實情이다.

더욱 아이러니컬한 점은 內務部奉下의 公立 公共圖書館은 財政支援을 어느 程度까지 助長해주는 面도 있어 施設確保策과 管理面이나 人事政策面에相當한 刷新을 期하고 있는 事實을勘察할 때 公共圖書館의 관리감독권과 운영체계가 一元화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나라의 諸圖書館이 正常的으로 自己 責務 完遂에 全力을 다 할 수 있다고 確信한다.

③ 類似 圖書館施設의 泛濫과 圖書館法의 模糊性
現在 우리 나라 公共圖書館의 發展을 沮害하는 要素의 하나로서 私設圖書室의 범람을 들 수 있는 바 ④ 私設圖書室이 부쩍 猥獈하게 된 要因은 公共圖書館의 施設不足에도 그 原因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이에 대한 法의in 適切한 制限措置가 없다는 것이 그 important한 要因의 하나로 볼 수 있다. 圖書館法 第24條에 「누구든지 圖書館과 同種의 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다만 이 法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圖書館이라는 名稱은 使用할 수 없다」라고 同種의 圖書館 施設 設置를 法의으로 許容함으로써 ⑤ 藏書와 司書職員 등 圖書館의 要素를 具備하지 않은 채 다만 자리만을 提供하는 私設圖書室의 범람을 招來케 한 重大한 法의 未備點을 露出하고 말았다. ⑥ 이렇게 法律의 虛點을 틈타 창궐하고 있는 私設圖書室은 社會의 美風良俗을 害치는 素亂性과 犯罪의 温床이 되는 惡影響만 助長하므로 이의 治癒策으로 上記한 法條項은 當然히 削除되어야 하며 아울러 詐則規定의 強化로 類似 圖書館의 범람을 強力히 規制해야 된다고 提言하는 바이다.

④ 法令으로 본 公共圖書館의 司書職員의 任用問題
圖書館法施行令 第4條에는 圖書館에 勤務하는 司書職員의 資格을 規定하고 있다. 이에 依하면 原則적으로 圖書館에 두는 職員은 司書資格 所持者로 任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關聯되는 公務員 任用令이 圖書館法施行令과 矛盾되는 事項을 內包한 채 그대로 放置되어 있으며 더욱이 內務部奉下 公立 公共圖書館은 司書職 職級類가 아닌 一般職으로서 地方公務員 任用令에 依하여 任命됨으로 因해 圖書館法 및 公務員法施行令에 規定된 條項과 相馳 되는 慣例를 形成하고 있다. 이처럼 相互 聯關係이 있어야 될 이려한 法規의 背馳性에 反하여 公務員 任用令 第3條 職級規定의 別表 職群에는 行政職群에 司書職列을 內包시켜 놓아 結果의으로 이는 司書職의 專門性을 全然 考慮치 않은不合理한 制度라고 아니 할 수 없는 바 이의 治癒手段으로 職群에 行政職群이 아닌 獨立의in 司書職群으로 分立시켜 固有의 專門性을 確立시켜 주는 것이 그 職級을 보다 効率的으로 運用할 수 있는合理的인 方案이 아닐까 思料되어 提言하는 바이다. 아울러 圖書館의 職制나 法令의 矛盾點은前述한 所屬廳의 一元化와 公務員任用令의 改正 등으로 時急히 削減되어야 할 것임은 再言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 機會에 本人은理想的인 圖書館 職制에 대한 所信을 披瀝해 보고자 한다. 먼저 職員構成에 있어서는 職階別 實施와 職位는 資格과 職務, 責任에 의해 區別하고, 職種은 專門職과 非專門職으로 區分해서相互緊密한 聯關係와 責任의 限界를 分明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다음으로 館長의 選任은 道立圖書館 以下の 各級圖書館은 地方公共團體의 長이 當地의 議會承認을 얻어 任命하는 圖書館委員들이 互選하는 制度를 勸獎한다. 나아가서 이렇게 設置된 同委員會의 人員構成은 5名 乃至 10名으로 하는 것이 合理의이라 보며, 對象은 社會各層에서 選出, 任期는 4~8年으로 順次 交代케 해서 無報酬로, 職務는 當該 圖書館 運營의 基本方針, 規則, 規程의 制定 및 館長 互選權을 賦與하도록 制度化함이 理想의 方案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國立圖書館長은 文教長官, 國會 文公委員長, 大法院 判事中 1名, 學界 代表 6名으로 管理運營委員會를 組織해서 館長은 大統領이 同委員會의 提請이 있으면 任命토록 하는 制度로서 밑에 局制度를 두

는 方案과 또는 文教部長官이 指名하는 5名 乃至 10名線으로 構成되는 圖書館委員會에서 互選하는 두 가지 方案을 想定할 수 있다.

⑤ 不用圖書 및 紛失圖書의 處理問題

利用價值를 거의 喪失한 圖書 즉 圖書內容이 穎고 圖書形態가 頽落, 汚損 등으로 利用價值가 없는 圖書類나 資料價值가 穎고 重複되는 등 實効性을 喪失한 圖書類와 善意의 管理者의 不可抗力에 의해 起起되는 紛失圖書의 處理方途 講究가 時急히 要請되고 있는 바 이는 不用圖書 廢棄에 따르는 法規의 明示規定을 定立해서 生生한 資料提供의 方途를 摸索하는 것이 合當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國立中央圖書館의 主管下에 諸般 準則을 例示하여 둘이 妥當하다고 본다.

1968年度 海外學術雜誌 豫約案內

1. 海外學術雜誌 · 新聞
2. 雜誌 뼈넘버
3. 海外學術書籍
4. 마이크로 필름 및 機材

● 購讀節次에 對하여 問議하여 주시면
案內書를 보내 드립니다.



迅速正確한 情報
誠実과 責任 있는 業務
적은 手數料의 條仕

유네스코 韓國委員會 쿠풀代行機關

株式會社 팬 아메리칸 써비스

서울特別市 鍾路 3街 13의5(裕林빌딩 3層)

電話 (74)3783 (73)4262 國際私書函 1647號

- 사랑에 국경 없고 봉사에 차별 없다
- 집집마다 적십자 사람마다 봉사원